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1월 3일(목) 11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9. 1. 2.(수)	담당부서	산업기술시장과
담당과장	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양광석 과장(044-203-4530)	담 당 자	김수희 사무관(044-203-4534) 양재원 사무관(044-203-4533)
	법무부 형사기획과 진재선 과장(02-2110-3269)		조수영 검사(02-2110-3269)
	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김지수 과장(042-481-5213)		조상흠 사무관(042-481-5923)

『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』 발표

-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대상 해외 인수·합병 사전승인제 도입 -
- 산업기술 유출시 손해액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-
- 기술유출로 인한 범죄수익환수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-

▸ 지금까지는 **국가 연구개발(R&D)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·합병**하는 경우 신고만하면 되었으나,

- 앞으로는 이 경우 **정부의 승인**을 받아야 하며, **국가 연구개발(R&D)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**하도록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강화

▸ 또한 국가핵심기술, 영업비밀 등 **기술 유출자**에게는 기업에 끼친 **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**가 도입되고,

-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**몰수·추징**하는 등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

□ 정부는 1.3.(목)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이낙연 총리 주재)에서 『**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**』(이하 대책)을 발표했다.

○ 주요국들의 기술보호 강화 추세 속에 우리나라도 **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·시도 사례**가 적발되고 있으나,

* 미국은 핵심기술 보유 자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심사 대상을 지배지분 확보 → 일부지분 획득으로 강화(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, '18.8월~)

○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**기술탈취형 인수합병(M&A) 시도에 취약하고,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**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.

○ 이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을 위하여 산업부, 특허청,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하여 **4대 분야, 20개 과제**로 대책을 마련했다.

【『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』 주요내용 】

1.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

□ 정부는 현재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기업이 **국가핵심기술을 수출**하는 경우에 **국가R&D를 지원**받아 개발한 기술이면 **사전 승인**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, **자체개발**한 경우는 **사전 신고**토록 하고 있다.

○ 반면에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**인수·합병**하는 경우에는 **국가 연구개발(R&D) 지원**을 받았을 경우 **사전 신고**토록 하고 있으나, **자체개발한 기술**을 보유한 경우에는 **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.**

○ **기술수출**과 **인수·합병** 모두 국가핵심기술이 국외로 이전되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"**기술탈취형 인수합병(M&A)에는 대응수단이 부족하다**"는 지적이 꾸준히 되어있어,

- 이번 대책을 통해 **해외 인수·합병**의 경우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**국가연구개발(R&D)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**을 받도록 하고, **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**토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.

구 분	기술수출	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M&A	
		현 행	개 선
국가 R&D 지원	승인 대상	신고 대상	**승인 대상**
국가 R&D 非지원	신고 대상	관련규정 없음	**신고 대상**

□ 또한 산업부 외 **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**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**비밀유지** 의무를 부과하고, **정보공개의 제한적 요건*을 설정하는 한편, 정보공개 심의시 산업부와 협의**토록 할 예정이다.

* 국가안보 등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생명·건강 등의 보호를 위해 공개

□ 아울러, 현행 **12개 분야 64개 기술***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, 신소재 등 **신규업종으로 확대·지정**하고, **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**을 **완화**하여 기술보호 범위를 넓히며,

* 국가핵심기술 분야(기술) 현황 : 정보통신(10), 자동차·철도(9), 반도체(7), 조선(7), 철강(7), 기계(6), 원자력(5), 우주(4), 생명공학(3), 로봇(3) 디스플레이(2), 전기전자(1)

○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**보안컨설팅**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.('18년 170개사 → '19년 200개사)

2.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

□ 산업기술 유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**관대한 처벌기준 등으로 범죄 차단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** 상황이다.

○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(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)을 적용받는 **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**에 대해 **최소형량을 설정**하여 **처벌기준을 강화**하고(15년 이하 징역 → (안)3년 이상)

* 윤상직 의원이 '7년 이상 징역'으로 강화된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('18.2월)하여 현재 산자중기위에 상정된 상태

- **영업비밀**의 **해외유출** 또한 **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.**(10년 이하 징역 / 1억원 이하 벌금 → 15년 이하 / 15억원 이하)

* 영업비밀 유출 처벌 강화기준은 '19.7월 시행 예정

○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시 **징벌적 손해배상제도**를 **도입**하여 **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**하게 하며

*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'19.7월 시행 예정

○ **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**로 얻은 **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**할 수 있도록 **범죄수익은닉규제법**도 **개정**하기로 했다.

* 백혜련 의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('18.9월)

3. 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

□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기술적 내용이 많아 **전문성이 요구**되므로 **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**하기로 했다. (법무부, '18.6월 일선청 지시완료)

□ 또한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**피해액 산정** 등에 필요한 자료를 **법원**이 **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**할 예정이며,

○ 유출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유출자가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·등사할 경우 2차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**법원이 피고의 소송기록 열람·등사를 제한**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.

4.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

□ 기술유출 사건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**금융거래정보를 활용**할 수 있도록 하고(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사항),

○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유출경위 등을 **조사**를 할 수 있도록 **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** 할 예정이다.(산업기술보호법 개정사항)

□ '19.3월 시행 예정인 **특허청 특사경의 영업비밀침해 단속**권을 적극 활용하고,

○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**신고포상금도 올려**(현행 1억원 → (안)20억원) **내부 신고를 유인**할 계획이다.

□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"**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다.**"라고 강조하고,

○ "**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.**"라고 말했다.

※ 붙임 : 제도개선 과제 리스트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김수희 사무관(☎ 044-203-4534)양재원 사무관(☎ 044-203-45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제도개선 과제 리스트**

	과제내용	주요내용
중요 산업기술 관리체계 강화	기술탈취형 인수·합병 시도 차단	· 연구개발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해외 M&A에 대해 신고 → 승인제 변경
	정부·공공기관 보유 국가핵심기술 관리강화	· 비밀유지의무 대상자 확대, 국가핵심기술 포함 자료의 정보공개 여부 심의시 산업부와 의견 협의
	신산업 중심 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	·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대상을 AI·신소재 등으로 확대
	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 완화	·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정의 규정에서 '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' 부분 삭제
	중요기술 보유기업 지원 확대	· 교육과 컨설팅 지원 대폭 확대, 중소기업 위주로 자금 지원 실시
	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 개선	· 국내기업의 해외공장에 대한 수출과 관련하여 반복 신고· 승인 절차 개선(서면심사제 도입 등)
산업기술 침해행위 처벌 강화	기술보호법령 처벌기준 강화	·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징역형 강화 (15년 이하 → 3년 이상)
	기술유출사건 법원 양형기준 강화	· 현행 최대 6년형인 양형기준을 상향(대법원과 협의중)
	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	· 중대한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
	범죄수익 환수 대상 신규 포함	·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산기법, 부정경쟁방지법 포함하여 범죄수익 환수
재판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	중요사건의 수사검사 직접 공소 유지	·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검사 직접 공소유지
	피해기업 기술유출 입증책임 완화	· 피해기업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법원이 기술유출자에게 피해액 산정 등 관련자료 제출명령제도 도입
	재판과정에서 기술유출 가능성 방지	· 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열람·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, 열람 허용시 비밀유지 의무 부과
기술보호 담당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 체계 구축	기술유출사건 금융거래정보 이용허용	·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(FIU) 보유 금융정보를 활용토록 법령 개정
	기술유출 조사 직무수행 근거 강화	·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유출경위 조사 권한 신설
	수사결과 발표시 정보기관 공조표시	· 검· 경 수사결과 발표시 정보기관의 기여부분 포함
	특허청 특사경 업무권한 확대	·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특허청의 특사경 권한 부여
	기술보호 담당조직 확대	· 산업부, 특허청 기술보호 담당 조직 및 인력 확충
	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 확대	·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 등 안보 관련 부처 추가
	신고포상금 제도개선	·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조정(1→20억원) 및 대국민 홍보 강화